

이 공고문은 모든 근로자나 직원들이 쉽게 볼수 있는 곳에 게시 해야 합니다. 게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적용됩니다.



공고

로스앤젤레스 최저임금

최저임금 발효일 2019년 7월 1일



\$13.25 시간당

근로자나 직원의 수가 25명 이하인 고용주

\$14.25 시간당

근로자나 직원의 수가 26명 이상인 고용주

로스앤젤레스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제정된 최저임금 시급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시급은 매년 최저임금 조례 섹션 187.02 적용년도별 최저임금액 스케줄에 따라 적용 됩니다. 자격조건에 따라 면제 및 연기가 가능합니다.

발효일:	근로자나 직원의 수가 26명 이상인 고용주:	근로자나 직원의 수가 25명 이하인 고용주, 또는 최저임금 인상 유예 자격요건이 승인된 직원 수가 26명 이상인 비영리 단체:
7/1/2017	\$12.00	\$10.50
7/1/2018	\$13.25	\$12.00
7/1/2019	\$14.25	\$13.25
7/1/2020	\$15.00	\$14.25
7/1/2021	\$15.00	\$15.00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최저임금 집행 부서 조례에 따라 계약 관리기관 (Bureau of Contract Administration)에 임금표준부 (Office of Wage Standards)를 지정 잠재적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직장, 직원 인터뷰 및 급여 기록을 검토합니다. 임금표준부는 로스앤젤레스 최저임금 조례 시행위반 및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하게됩니다: 1) 최저임금 시급 비준수, 2) 공지, 게시 비준수 및 급여 기록, 급여장부 보관 비준수, 3) 직원에게 가해진 보복 행위. 직원은 로스앤젤레스시 법규 188.04항 (Los Angeles Municipal Code Section 188.04)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 행사로인한 고용주의 부당한 취급 및 보복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유급 병가

발효일 2017년 7월 1일

모든 고용주는 로스앤젤레스 최저임금 조례에 따라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 유급 병가는 로스앤젤레스 도시내에서 특정한 주에 최소 2시간을, 1년에 30일 이상을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일한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자격	
연초 발생	고용 1년 주기 또는 달력상 매년 초에 최소 48시간의 유급 병가 또는 -
누적 발생	노동 30시간 당 1시간의 유급 병가.
72시간 제한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유급 병가는 다음 연도에도 유효하며 최소 72시간으로 제한합니다. 고용주가 제한을 두지 않거나 더 높은 제한을 둘수 있습니다.
고용종결	고용주는 직원과의 고용 종결시, 발생하였거나 미사용한 유급 병가에대한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원	직원의 고용 종결 후 1년 이내에 재고용되는 경우,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미사용한 유급 병가가 복원 되어야 합니다.

사용	
언제	직원은 고용 받은지 90일째 날부터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용주는 직원이 자신, 가족, 혈연, 친밀한 사람을 위해 유급 병가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할 때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간 사용의 자격사항은 LAMC 187.04(G) 항에 나와있습니다.
	유급 병가의 사용은 매년 48시간으로 제한할수 있습니다.

직원은 로스앤젤레스시 법규 187.06항 (Los Angeles Municipal Code Section 187.06)에 따라 유급 병가를 받을 권리 행사로 인한 고용주의 부당한 취급 및 보복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임금표준부로 연락 하십시오:

전화 1-844-WAGESLA (924-3752), 이메일 wagesla@lacity.org, 웹사이트 <http://wagesla.lacity.org/>.

미국 장애인법의 제 2조를 적용하는 기관으로써, 로스앤젤레스 시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도시의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에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